#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취자 본인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 보호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취자 보호와 시민 피해 예방의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나. 주취자 본인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의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제3항)
라. 보호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9조)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 의 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및 시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호 및”을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로,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욕설이나”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적인 조치나 욕설,”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취자 보호 및”을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로,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

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 및”을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피해”를 각각 “시민 피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련 행정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등”을 “등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취자 보호를”을 “주취자의 보호와 시민의 피해 예방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을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을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 및 피해 예방에”를 “보호를 위하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력체계의 구축)”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을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로 한다.

제9조 중 “안 된다”를 “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및 시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
|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 ---------- ---------- 관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적인 조치나 욕설, ------- 해야 ----------.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br>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br>② ----------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 |

| | |
|---|---|
| 을 지원할 수 있다. | ------ 지원을 할 ---------- |
| <신 설> | ③ 시장은 주취자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 |
|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 1. ---------- 시민 피해 ---------- |
|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 2. ---------- 시민 피해 ---------- |
|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3. 행정기관 ---------- 등 관계 기관---------- |
|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주취자의 보호와 시민의 피해 예방을 ---------- |
|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 | 제6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를 ---------- |

| | |
|---|---|
|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1. ~ 4. (생 략)<br>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br>② (생 략) | ----------.<br>1. ~ 4. (현행과 같음)<br>5. ---------- 보호를 위하여 ----------<br>② (현행과 같음) |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해야 한다.<br>② (생 략) |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시민의 ----------.<br>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 ---------- 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붙임 1]

# 관 계 법 령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붙임 2]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 재 준

[붙임 3]

# 현 행 조 례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952호, 2025. 12. 15.,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044-301-427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보호 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세종경찰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주취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차 또는 구급차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